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737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6호)	서영교의원	2024. 6.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조세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62호)	정일영의원	2024. 6. 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조세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42호)	정성호의원	2024. 6. 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조세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08호)	박성준의원	2024. 6. 1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조세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26호)	강승규의원	2024. 6. 1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조세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85호)	정일영의원	2024. 6. 2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조세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35호)	안도걸의원	2024. 6. 2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조세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49호)	박정의원	2024. 6. 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조세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33호)	박수민의원	2024. 6. 2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조세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25호)	조정훈의원	2024. 7. 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조세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63호)	박희승의원	2024. 8. 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조세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08호)	윤호중의원	2024. 9. 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조세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73호)	전재수의원	2024. 11. 1.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4.24.)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95호)	전재수의원	2024. 11. 4.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4.24.)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140호)	윤준병의원	2024. 12. 31.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4.24.)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242호)	임광현의원	2025. 1. 6.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4.24.)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598호)	이용선의의원	2025. 1. 17.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4.24.)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629호)	이수진의의원	2025. 1. 20.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4.24.)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657호)	이수진의의원	2025. 1. 21.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4.24.)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178호)	강대식의원	2025. 2. 1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255호)	윤영석의원	2025. 2. 1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391호)	신영대의원	2025. 3. 2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494호)	한지아의원	2025. 5. 1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893호)	김태선의원	2025. 7. 3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894호)	추경호의원	2025. 7. 3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975호)	최은석의원	2025. 8. 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982호)	이용우의원	2025. 8. 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063호)	김영진의원	2025. 8. 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275호)	김영진의원	2025. 8. 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09호)	김영진의원	2025. 8. 2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655호)	정부	2025. 9. 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76호)	서영교의원	2025. 9. 1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제3차·제5차 조세소위 심사, 제8차 조세소위 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장의 심사보고대로 위 3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진출자 주식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

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안 제57조의2 제1항·제2항, 안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안 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안 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

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안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 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안 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4.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내항해운 산업발전, 내항선원 실

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마목 전단 중 “6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사무직원이 학교의”를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로 하며, 같은 호 머목2)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중 “월 20만원”을 각각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1”로 한다.

제57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이”를 “나이 및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장애인”으로 한다.

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44조의2제5항”을 “제14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의10제2항 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제3항제2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해당 목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

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주식등”을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등”을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8조의9제2항 중 “국외전출자의 범위”를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로 한다.

제118조의10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

산)”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0퍼센트

제118조의1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3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내주식등”

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4제1항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5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2.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18조의18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나목 중 “초과하는”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제한도금

액”을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공제한도금액”을 각각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 한다.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제129조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중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 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27조제1항제1호의 소득: 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나. 제127조제1항제5호의 소득: 제1항제5호의2 또는 같은 항 제5호의3의 세율

다. 제127조제1항제6호의 소득: 제1항제6호나목의 세율

라. 제127조제1항제7호의 소득: 제1항제7호의 세율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 액을 납부한 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44조의2제1항 중 “금액을 원천징수한다”를 “금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추가납부세액이”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의4제1항 중 “특수관계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으로 한다.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의9제3항 전단 중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56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을 “제156조의6제5항 본문”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2조의2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162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4조의2제3호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및 제6조제2항·제4항·제5항 중 “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7조의2제1항·제2항(퇴직소득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 및 제12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2026년 7월 1일
 2. 제17조제3항 및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2027년 1월 1일
- 제2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육아휴직수당 또는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2제1항·제2항(퇴직소득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57조의2제2항(퇴직소득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가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배당가산을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의 제129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u>600만원</u>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립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 ----- ----- <u>3천만원</u> -----.
바.·사. (생략)	바.·사.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마. ----- ----- -----

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바. ~ 러. (생략)

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생략)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
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
속기관의 -----

바. ~ 러. (현행과 같음)

며. -----

1) (현행과 같음)

2) -----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 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 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 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 ----- ----- ----- 해당 자 녀 1명당 월 20만원 ----- -----
버. ~ 처. (생 략)	버. ~ 처.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 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	아.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 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 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 의 금액	4) ----- ----- ----- ----- ----- -----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

5) (생 략) 자. (생 략) 제17조(배당소득) ①·② (생 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u>100분의 10</u>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 7. (생 략) ④ ~ ⑥ (생 략) 제57조의2(<u>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u>) ① 거주자의 <u>종합소득금액</u>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u>종합소득산출세액</u>에서 공제할	5)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당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u>100분의 11</u>----- -----. 1.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u>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u>) ① ----- -- <u>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u>----- ----- ----- ----- <u>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u>
--	---

수 있다.

1. 2.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
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득 산출세액-----
-----.

1. 2. (현행과 같음)

② -----

-----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1. (현행과 같음)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
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
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의 합계액

<삭제>

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

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2. (생략)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 다. (생략)
- ④ ~ ⑪ (생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과제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현행과 같음)
3. ----- 장애인-----

- 가. ~ 다. (현행과 같음)
- ④ ~ ⑪ (현행과 같음)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u>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u>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으로 본다. ③·④ (생략)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u>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u>(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u>2027년 12월 31일</u>)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	----- ----- <u>납세지 관할</u>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u>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u>-----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
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
출하는 경우

2. (생략)

④ ~ ⑥ (생략)

제96조(양도가액) ① (생략)

② 삭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
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생략)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
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6조(양도가액) ① (현행과 같
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다음 각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
산가액을 뺀 금액

<신 설>

<신 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
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
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
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
도가액에서 해당 목의 금액--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
는 금액

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
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
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

----- 직계존비
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 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략)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

----- 제94조제1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
-----.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
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
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 ⑥ (생략)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
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
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
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
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
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
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
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
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
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
목에 따른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계산식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생략)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③ (생략)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

-----.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주식
등-----

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
----- 주
식등-----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
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
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
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
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③ (생략)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
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
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
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등) ① -----
----- 주식등-----

----- 주식등-----

-----.
----- 주식등-----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주
식등-----

-----.

1. -----
주식등-----

----- 주식등-----

2.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주

식등

⑥ _____ 주
식등 _____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

--- 주식등-----

-----.

② -----

----- 주식등 -----

----- 주식등-----
-----.

③ -----
----- 주
식등-----

----- 주식
등-----

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

-----.

④ -----

----- 주식등-----

-----.

⑤ ----- 주식등-----

-----.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

-----.

1. -----
----- 주식등

<u>식등</u>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 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 ----- -----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 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u>국내주 식등</u>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 우	2. ----- ----- <u>주식등</u> ----- --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 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 내에 국외전출자 <u>국내주식등</u> 을 상속받은 경우	3. ----- ----- ----- <u>주식등</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8(<u>국외전출자</u> <u>국내주 식등</u>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u>국내주식등</u>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 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제118조의18(<u>국외전출자</u> <u>주식등</u> 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 ----- <u>주식등</u>----- ----- ----- ----- ----- -----.
② 국외전출자 <u>국내주식등</u>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u>주식등</u>----- ----- -----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 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 -----

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5. (생략)

5의2.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
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
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
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
용한다.

가. (생략)

나. 삭제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
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
의 4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
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

-----.

가. (현행과 같음)

다. -----

----- 100분
의 3

5의3. -----

-----.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가. (생략)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
분의 60

<신설>

6. ~ 8.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
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
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
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
로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
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
분의 50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배
당소득공제한도금액”-----
-----.

⑦ -----
----- 배당소득공제
한도금액-----

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
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
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
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
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
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
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
다.

<신 설>

---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 ----

----- 배당소
특공제한도금액-----

⑧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중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
금계좌인출공제소득(제57조의
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신 설>

<신 설>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해당 목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

가. 제127조제1항제1호의 소
득: 제1항제1호라목의 세
율

나. 제127조제1항제5호의 소
득: 제1항제5호의2 또는 같
은 항 제5호의3의 세율

다. 제127조제1항제6호의 소
득: 제1항제6호나목의 세
율

라. 제127조제1항제7호의 소
득: 제1항제7호의 세율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
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같은 항 제1호
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
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이라 한
다)을 한도로 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연금계좌인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 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 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⑪ ----- 제10항-----

-----.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

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신 설>

금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③ ~ ⑤ (생략)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추가납부세액이

-----.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

②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⑦ ----- 제6항-----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② (생략)

③ 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생략)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

-----.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56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

----- 제156조의6제5항 본문 -----

-----.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⑥ (생략)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
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
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
영하는 사업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
입·발급의무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다만, 제162조의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u><신 설></u> <u><신 설></u>	----- ----- 가. <u>제94조제1항제3호가목1)</u> <u>에 해당하는 주식등</u> 나. <u>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u> <u>따른 주식등</u>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4. (생략) 5.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의3제1항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	제1조(시행일)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 -----

분: 2026년 1월 1일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
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생략)

②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2026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 2027년 1월 1일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
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 2027년 1월

1일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2027년 1월 1일 -----

다.	--.
⑤ <u>2026년 1월 1일</u> 전에 지급한	⑤ <u>2027년 1월 1일</u> -----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	-----
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	-----
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